

I 지방세(시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분	'22년(결산)	'23년(결산)	증감액
비과세·감면액(A)	12,539,559,980	11,805,557,420	△734,002,560
비과세	10,269,050,620	9,548,331,180	△720,719,440
감면	2,270,509,360	2,257,226,240	△13,283,120
지방세 징수액(B)	76,361,627,380	78,736,717,570	2,375,090,190
비과세·감면율(A/A+B)	14.1	13.0	△1.1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야	'22년(결산)	'23년(결산)	증감액
총계	12,539,559,980	11,805,557,420	△734,002,560
1 일반공공행정	5,938,448,760	5,669,354,550	△269,094,210
2 공공질서 및 안전	144,184,940	169,289,020	25,104,080
3 교육	283,311,030	245,659,430	△37,651,600
4 문화 및 관광	291,196,900	264,267,640	△26,929,260
5 환경보호	27,500	22,760	△4,740
6 사회복지	622,457,010	590,997,730	△31,459,280
7 보건	2,522,190	2,279,690	△242,500
8 농림해양수산	382,875,800	421,455,130	38,579,330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8,404,410	64,460,780	16,056,370
10 교통 및 물류	1,468,520	1,311,880	△156,640
11 국토 및 지역개발	600,238,740	591,331,050	△8,907,690
12 국 가	4,184,453,970	3,744,461,400	△439,992,570
13 기 타	39,970,210	40,666,360	696,150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2년(결산)	'23년(결산)	증감액
총 계	12,539,559,980	11,805,557,420	△734,002,560
보통세	12,539,559,980	11,805,557,420	△734,002,560
주민세	117,528,500	118,408,000	879,500
재산세	11,884,533,020	11,175,375,860	△709,157,160
자동차세	537,498,460	511,773,560	△25,724,900
지방소득세	-	-	-
담배소비세	-	-	-
목적세	-	-	-
지역자원시설세	-	-	-
지방교육세	-	-	-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연 번	지방세지출 항목(감면유형)	지 방 세 지 출 액		
		'22년 결산	'23년 결산	증 감 액
	총 계	12,539,559,980	11,805,557,420	△734,002,560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5,154,546,200	4,948,648,070	△205,898,13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7,017,040	7,431,860	414,82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49,720,610	44,914,590	△4,806,020
4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713,957,460	656,004,020	△57,953,44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3,207,450	12,356,010	△851,44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44,184,940	169,289,020	25,104,08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136,254,730	114,022,210	△22,232,520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47,056,300	131,637,220	△15,419,080
9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88,182,720	261,571,620	△26,611,100
1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771,830	674,430	△97,400

연 번	지방세지출 항목(감면유형)	지 방 세 지 출 액		
		'22년 결산	'23년 결산	증 감 액
11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242,350	2,021,590	△220,760
12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25,190	20,680	△4,510
13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2,310	2,080	△230
14	장애인에 대한 감면	273,251,620	249,957,810	△23,293,810
15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26,320,050	23,336,640	△2,983,410
1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0,039,060	10,255,380	216,320
1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46,959,370	45,044,280	△1,915,090
18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20,715,070	218,344,790	△2,370,280
1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3,481,780	3,443,790	△37,990
2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41,690,060	40,615,040	△1,075,020
2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522,190	2,279,690	△242,500
22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84,484,060	83,713,350	△770,710
23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26,088,270	22,175,780	△3,912,490
24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63,839,570	63,035,570	△804,000
2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5,049,020	13,915,950	△1,133,070
26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78,560	45,650,470	45,571,910
27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16,764,880	16,465,460	△299,420
2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70,595,780	173,374,420	2,778,640
29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5,975,660	3,124,130	△2,851,530
3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10,347,570	12,644,940	2,297,370
31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0,000	50,000	-

연 번	지방세지출 항목(감면유형)	지 방 세 지 출 액		
		'22년 결산	'23년 결산	증 감 액
3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649,830	602,370	△47,460
3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19,230	19,720	490
34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306,330	16,233,950	12,927,620
35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4,031,450	34,909,800	878,350
36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468,520	1,113,880	△354,640
3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198,000	198,000
38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81,988,450	75,655,450	△6,333,000
39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624,110	559,250	△64,860
4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474,103,770	496,699,490	22,595,720
4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3,665,830	1,679,220	△21,986,610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9,856,580	16,737,640	△3,118,940
43	국가에 대한 비과세	4,183,544,750	3,743,622,660	△439,922,090
44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909,220	838,740	△70,480
45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379,100	21,562,780	1,183,680
46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628,470	562,340	△66,130
4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828,450	744,340	△84,110
4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2,762,650	2,460,820	△301,830
4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5,371,540	15,336,080	△35,460

II 지방세(시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 공공행정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5,669,354,55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주민·재산·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9①, § 26①, § 77①1호, § 109①1호, § 145①1호, §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1·2호)	소 계	4,948,648,070
		주 민 세	50,000
		재 산 세	4,943,660,170
		자 동 차 세	4,937,900
2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조합이 1년이상 공용·공공용에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 109②, § 145②)	소 계	7,431,860
		재 산 세	7,431,86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등주민공동체의주민공동소유부동산등에대한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면제(지방세법 § 26②4호지방세특례제한법 § 90①·②)	소 계	44,914,590
		주 민 세	150,000
		재 산 세	44,764,590
4	사유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 109③1호, § 145②)	소 계	656,004,020
		재 산 세	656,004,02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등에대하여취득·재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및출연하여설립한주식회사,재단법인에대한취득·재산세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 85의2③)	소 계	12,356,010
		재 산 세	12,356,01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69,289,02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169,289,020
		주 민 세	1,383,250
		재 산 세	27,184,740
		자 동 차 세	140,721,030

3. 교육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교육		합 계	245,659,43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114,022,210
		주 민 세	50,000
		재 산 세	113,972,210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형·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주민·재산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131,637,220
		주 민 세	300,000
		재 산 세	131,337,22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264,267,64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소 계	261,571,62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0①, § 50②, § 50③, § 50⑤, §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8④) 	주 민 세	1,350,000
		재 산 세	260,221,620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소 계	674,43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44조의2) 	재 산 세	674,43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2,021,59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55②) -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 산 세	2,021,590

5. 환경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환경		합 계	22,760
12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47)	소 계	20,680
		재 산 세	20,680
13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49)	소 계	2,080
		재 산 세	2,080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사회 복지		합 계	590,997,730
14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등급 1~3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를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249,957,810
		자 동 차 세	249,957,810
15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2①, § 22②, § 22③, § 22⑤)	소 계	40,615,040
		주 민 세	5,381,250
		재 산 세	35,233,7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22⑥) 		
16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9) 	소 계	23,336,640
		재 산 세	23,336,640
1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20 2호) 	소 계	10,255,380
		재 산 세	10,255,380
1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9②, §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9④) 	소 계	45,044,280
		재 산 세	53,990
		자 동 차 세	44,990,290
1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소 계	218,344,790

	<p>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4) 	재 산 세	218,344,790
20	<p>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 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3,443,790
		재 산 세	3,443,790

7. 보건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보건	합 계	2,279,690
21	<p>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2,279,690
		재 산 세	2,279,69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421,455,130
22	농업인에 대한 감면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7)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 106의2① 1호)	소 계	83,713,350
		주 민 세	83,708,750
		재 산 세	4,600
23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② 2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3③)	소 계	22,175,780
		재 산 세	22,175,780
24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1②)	소 계	63,035,570
		재 산 세	63,035,570

2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비과세 - 산림보호구역 및 채종림, 시험림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 109③ 2호)	소 계	13,915,950
		재 산 세	13,915,950
26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9②)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0②)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 106의2① 1호)	소 계	45,650,470
		재 산 세	45,650,470
27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2①)	소 계	16,465,460
		재 산 세	16,465,460
2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연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4③, § 14④)	소 계	173,374,420
		재 산 세	173,374,420
29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16)	소 계	3,124,130
		재 산 세	3,124,130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산업 및 중소기업	합 계	64,460,780
3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목적 최초 취득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12,644,940
		재 산 세	12,644,940
31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50,000
		주 민 세	50,000
3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소 계	602,370

	<p>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4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46①·②)</p> <p>-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6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46③)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당 건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 54① 6·7호)</p>	재 산 세	602,370
33	<p>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p> <p>-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p>	소 계	19,720
		재 산 세	19,720
34	<p>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p> <p>-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79)</p> <p>-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 80)</p>	소 계	16,233,950
		재 산 세	16,233,950
35	<p>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 3호)</p> <p>- 자동차,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68①)</p>	소 계	34,909,800
		자 동 차 세	34,909,800

10. 교통 및 물류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1,311,880
36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1,113,880
		재 산 세	1,113,880
3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 限)(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 계	198,000
		자 동 차 세	198,000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591,331,050
38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②)	소 계	75,655,450
		재 산 세	75,655,450
39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 계	559,250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②)	재 산 세	559,250
4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75%)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수도권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496,699,490
		재 산 세	496,699,490
4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소 계	1,679,220
		재 산 세	1,679,220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6,737,640
		재 산 세	16,737,640

12. 국가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3,744,461,400
43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주민·재산·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소 계	3,743,622,660
		주 민 세	22,690,750
		재 산 세	3,709,961,720
		자 동 차 세	10,970,190
44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 계	838,740
		재 산 세	838,740

13. 기타

연번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23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40,666,360
45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 계	562,340
		재 산 세	562,340

46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 126 3호)	소 계	21,562,780
		자 동 차 세	21,562,780
4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72②)	소 계	744,340
		재 산 세	744,340
48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87① 1호, §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87① 2호, § 87② 2호)	소 계	2,460,820
		재 산 세	2,460,820
4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 92의2)	소 계	15,336,080
		주 민 세	3,294,000
		재 산 세	8,516,320
		자 동 차 세	3,525,760